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2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김태호·김성원·임이자

김위상 • 박충권 • 서범수

이상휘 · 정연욱 · 최형두

조승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또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아동이 학교에 매일 다니며 이용하는 등하굣길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지정의 사각지대로 놓여, 아동의 등하교 시에 유괴 등 범죄 노출 가능

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의 후속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를 "절차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어린이집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다수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보행하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를 아동보호구역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 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 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 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 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 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하여야 한다. 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제2호(어린이집만 해 당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다수가 그 시설을 이 용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보행 하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 다)를 아동보호구역으로 반드 시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 -----절차와 범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한다.	<u>세부적인 내용</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